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경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법무관

이진철

I. 들어가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종전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 다시 운전을 하여 무면허 또는 음주 및 무면허로 단속되는 경우도 수 없이 많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운전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무릅쓰고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변명을 하는 등 그들의 변명도 다양각색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명들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무죄 항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정상관계에 대한 항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를 피고인의 처벌에 있어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관련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건의 소개

1. 사건명

가. 대상사건

사 건 명 2009영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2009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피고인) 조 ○ ○

나. 비교사건

사 건 명 2009영장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고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피고인) 장 ○ ○

2.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09. 10. ○○. 16:00경 ○
○군 ○○면 ○○리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95소○○○○호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6km 떨어진
○○군 ○○면 ○○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¹⁾

피의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불
과 7개월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
정이 있었기 때문에 곧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3. 피의자의 주장

대상사건 피의자 조○○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
다. 자신의 잘못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나라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어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쩔 수 없으나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구속을 앞둔 사람치고는 매우 담담하고 의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마침 그의 말처럼 이 사건에는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기도 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였다.

피의자는 넓은 농지와 정미소를 소유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부농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7개월 전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이번 사건은 다른 남자와 외도하면서 집을 나간 아내의 행방을 알게 되어 아내를 찾아 나서다 단속된 것으로서 다른 사건들과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는 0.051%에 불과하였던 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는 채혈과 달리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운전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이와 같은 무죄항변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의자의 범행경위에 대한 정상관계가 영장의 기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법원에서 어떠한 심증을 형성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비교사건을 놓고 본다면 낮은 음주측정 수치를 문제삼은 것이 주효했다고 추측해볼 수는 있겠다.

피의자 장○○에 대한 사건은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여러 모로 이 사건과 비교된다. 장○○는 생선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동종범죄 전력의 횡수도 조○○보다 적었으며, 죄명도 무면허운전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건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 범행 경위나 도주 가능성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장○○에 대하여 크게 불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결과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무죄 주장과 관계된 사정 때문일 것이다.

5. 공판절차의 진행

가. 증거기록의 열람 및 사건 처리 방향의 수정

영장 단계에서 무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다면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정상관계로 중심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피고인과 상세한 면담을 나누어 본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 음주측정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커서 피고인이 마신 주량에 비해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구속수사는 피해갈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7개월 전의 음주·무면허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불과 7개월 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에 비롯된 것인 반면 그 이전의 범행은 농사를 짓던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술을 한잔 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의 불법성을 가벼이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한 변론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처는 약 1년 전에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고 피고인은 가출한 처를 기다리던 중 7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다른 지역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를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처를 찾아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는 잘못을 빌며 피고인에게 술상을 차려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따라 나설 차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뒤 다시 피고인 몰래 도망을 쳤고, 술에 취하여 뒤늦게 이를 알아챈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처를 찾아 나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자기

명의의 차량 2대 중 한 대는 아들에게 주었고, 나머지 한 대는 같은 마을 후배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을 하지 않은 채 7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빌려주었던 후배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때 마침 피고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마을 친구로부터 인접한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를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흥분하여 다시 처를 찾아 나섰고 마침 자신의 차량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여 처가 머물고 있다는 식당 주변까지 진행하다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피고인은 집나간 처를 잊지 못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고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물론 법원에서 이와 같은 운전 경위에 대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비교 사건의 피고인 장○○ 역시 구속수사에 뒤이은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장○○는 생업을 위해 생선배달을 해야만 하는데, 종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그 처가 대신 운전을 하여 생선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위 사건으로 단속된 날에는 처가 운전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이미 받아 놓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범행경위에 있어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비교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죄명에 음주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전력 역시 더 많았다는 점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V. 글을 마치며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지 불구속수사를 받는지에 따라 피의자에게 범

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글에서 살펴본 바 있다. 위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서는 실제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었으나 낮은 혈중 알콜 농도 수치와 그 측정 방법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다. 피의자가 단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안이었기에 따로 사전 면담을 하지 않았다거나 범죄사실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칫 영장 단계에서 정상에 관한 변론만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외로 영장이 기각된 경우, 그것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게 된 경우, 피의자들이 기쁨에 겨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 피의자도 사뭇 흥분된 표정으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공판절차에서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죄 값을 치르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러한 자세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던 비교사건의 피의자 장○○와 대조되었다. 그래서인지 영장 단계에 비해 힘이 빠져버린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을 활용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위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 좀 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